

투자권유준칙

앱솔루트자산운용
ABSOLUTE ASSET MANAGEMENT

I. 총칙

1.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Ⅲ.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Ⅲ-1. 투자자정보

6.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7.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4) 1)부터 3)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Ⅲ-2. 투자권유

8. 투자권유 절차

-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4)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9.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 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마.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바.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Ⅲ-3. 설명의무

10. 설명의무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3) 임직원등은 1) 및 2)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5) 임직원등은 1)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11.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10.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0. 1)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14. 1)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I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2.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2]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측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V.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3.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1)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4.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5.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 운용배분의 전략,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 아니 된다.
-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차.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

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1)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17.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 및 2)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1) 및 2)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18.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1]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일임의 경우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표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4) 회사는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별지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일반투자자 개인용)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및 제4-93조에 따라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 또는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고객명

▶ 기존정보 변경여부

신규 또는 정보변경 기존정보와 동일

▶ 작성자

본인 대리인

▶ 기초정보

주 권 상 장 법 인 임 원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없음 <input type="checkbox"/> 주권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요 해당(법인명 : _____)
1 연 령	<input type="checkbox"/> 19 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0 세~40 세 <input type="checkbox"/> 40 세~54 세 <input type="checkbox"/> 55 세~64 세 <input type="checkbox"/> 65 세 이상
2 연 소 득 현 황 (순 자 산)	<input type="checkbox"/> 2 억 초과 <input type="checkbox"/> 2 억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1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5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3 천만원이하
3 총 자 산 대 비 금 용 자 산 비 중	<input type="checkbox"/> 30%초과 <input type="checkbox"/> 30%이하 <input type="checkbox"/> 20%이하 <input type="checkbox"/> 10%이하 <input type="checkbox"/> 5%이하
4 향 후 경 제 상 황 예 상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5 총 금 용 자 산 대 비 투 자 상 품 비 중	<input type="checkbox"/> 10%이내 <input type="checkbox"/> 10%이상 ~ 20%미만 <input type="checkbox"/> 20%이상 ~ 30%미만 <input type="checkbox"/> 30%이상 ~ 50%미만 <input type="checkbox"/> 50%이상
6 투 자 경 험	<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 하는 주식형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input type="checkbox"/> 은행예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7 파 생 상 품 등 투 자 경 험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 투자경험 <input type="checkbox"/> 3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1 년 이상 ~ 3 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 년 미만
8 투 자 목 적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9 금 용 지 식 수 준 이 해 도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10 감 내 할 수 있는 손 실 수 준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 원금에서 20%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 원금에서 10%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11 투 자 예 정 기 간	<input type="checkbox"/> 3 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2 년이상 3 년미만 <input type="checkbox"/> 1 년이상 2 년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이상 1 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12 취약금융소비자확인	<input type="checkbox"/> 취약금융소비자 아님 <input type="checkbox"/> 65 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 취약금융소비자(65 세이상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고객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을 강화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 귀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 따라 매분기 1 회 이상 본인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 여부 확인 시 본인이 그 변경여부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향후 36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

201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_____ (인/서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_____ (인/서명)

▶ 취약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설명 확인서

1.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 받았습니.
2.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함을 설명 받았습니.
3. 본인은 본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기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인이 기 지급한 기본수수료는 계약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귀사가 본인에게 환급하며, 환급금액의 30%는 해지수수료로 징수됨을 설명 받았습니.

201 년 월 일

고객의 성명 _____ (인/서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_____ (인/서명)

[별지3]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설명확인서(고객보관용)

**투자위험등급
1등급(초고위험)**

앱솔루트투자자문(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명 : 투자일임계약

■ 계약회사 : 앱솔루트투자자문(주)

■ 상담직원 : 경영관리본부직원

성명

(서명/인)

< 핵심 사항 >

1. 투자 판단시 당사가 제공하는 사전 서면 자료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계약은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4. 이 계약 사전 서면자료에 기재된 **당사의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계약이전에 **투자대상, 보수체계(사전 서면자료 기재)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 이 투자일임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위험에 체크)
 - 시장 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
 - 거시환경 위험 :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
 - 개별기업 위험 :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에 따른 변화 노출
 - 유동성 위험 : 환급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가치하락 초래
 - 기타 위험 : ()
7. 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자산 매도시 매매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8. 일부 증권(레버리지 ETF 등)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유선을 통하여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보수 일부 환급 및 성과보수 수취,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운용규모가 계약의 일부해지 등에 의하여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1. 불법 차명거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 년 월 일

[별지4]

투자자정보 확인·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 교부 및 계약내용 설명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투자자성향 진단결과

- 고객님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응답결과 [점수 합계 _____ 점]
- 투자자 성향 :

■ 해당상품명 : 투자일임계약

■ 계약회사 : 앱솔루트투자자문(주)

■ 상품의 상대적 위험도 : 총 5단계 중 (1) 번째로 높음. **초고위험 상품**

■ 상담직원 : 경영관리본부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인)

<고객확인 사항>

1. 투자권유문서를 (받았음)
2. 상품의 내용, **핵심투자위험**(시장위험, 거시환경위험, 개별기업 위험, 유동성위험 등),
투자원금손실(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이 있으며,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하여 설명을(들었음, 듣지 못했음)
3. 투자일임계약 재산의 운용방법, 운용제한 및 운용전략, **손익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4. **불법차명거래**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본인은 상기의 고객확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듣고) 내용을 (이 해 하 였 음) 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본인 _____ (인/서명)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_____ (인/서명)서명)

[별표1]

적합성 판단방식

□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함.

□ 문항별 배점

○ 개인

문항		총점	1번	2번	3번	4번	5번
1	투자자연령	8	8	8	6	4	2
2	연소득현황(순자산)	9	9	7	5	3	2
3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	9	9	7	5	3	2
4	향후 경제상황 예상	8	8	6	4	2	0
5	총금융자산대비 투자상품비중	9	9	7	5	3	2
6	투자경험	12	12	10	7	4	2
7	파생상품 등투자경험	3	3	2	0		
8	투자목적	12	12	10	7	4	2
9	금융지식수준 이해도	10	10	7	4	2	
10	감내할수 있는 손실수준	10	10	7	4	2	
11	투자예정기간	10	10	8	6	4	2
합계		100					

* 중복응답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계산

○ 법인

문항		총점	1번	2번	3번	4번	5번
1	법인의 형태	8	8	6	4	3	2
2	순자산규모	9	9	7	5	3	2
3	총자산대비 금융자산 비중	9	9	7	5	3	2
4	향후 경제상황 예상	8	8	6	4	2	0
5	총금융자산대비 투자상품비중	9	9	7	5	3	2
6	투자경험	12	12	10	7	4	2
7	파생상품 등투자경험	3	3	2	0		
8	투자목적	12	12	10	7	4	2
9	금융지식수준 이해도	10	10	7	4	2	
10	감내할수 있는 손실수준	10	10	7	4	2	
11	투자예정기간	10	10	8	6	4	2
합계		100					

* 중복응답의 경우 가장 높은 배점으로 계산

□ 점수 결과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분류

총점범위	투자자 유형	위험등급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1등급(초고위험)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2등급(고위험)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3등급(중위험)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4등급(저위험)
안정형	20점 이하	5등급(초저위험)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투자위험등급 : 1등급 (초고위험)	일반형 투자일임	절대수익 추구전략을 통한 수익추구를 목표로 고객자산 지속 증가를 목표로 함.
------------------------	----------	---

□ 투자자유형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분		투자 상품 위험 등급				
		1등급 초고위험	2등급 고위험	3등급 중위험	4등급 저위험	5등급 초저위험
투자자 투자성향	안정형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 가능	
	공격투자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 가능	

□ 투자자의 투자성향 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적합성 판단

구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일반형 투자일임	가입가능	가입불가			
하이일드 투자일임	가입가능	가입불가			

[별표2]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

□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채권		투기등급 회사채 (BB 이하 포함)		회사채 (BBB+ ~BBB-	금융채 회사채 (A- 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결합증권	ELS/DLS	원금 비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 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그 외 주식	헷지된 주식형		
선물, 옵션, ETF		선물, 옵션, 레버리지 ETF	선물(헷지에 한함), ETF, 옵션매수			

□ 투자자의 투자성향 유형과 세부자산배분유형 적합성 판단

투자자 유형	Scoring 결과	성향	위험등급
공격투자형	80점 초과	•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 이상을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일임계약	1등급[초고위험]
적극투자형	60점 초과 ~ 80점 이하	• 초고위험 등급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 이상을 투자대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일임계약	2등급[고위험]
위험중립형	40점 초과 ~ 60점 이하	• 고위험 등급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중위험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 이상을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일임 계약	3등급[중위험]
안정추구형	20점 초과 ~ 40점 이하	• 중위험 등급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저위험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 이상을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일임 계약	4등급[저위험]
안정형	20점 이하	• 저위험 등급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초 저위험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 이상을 투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일임계약	5등급[초저위험]